2026년도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6. 7. 9. 목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심동섭(분과위원장), 정진근, 한승원, 홍준호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6-179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방윤섭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026건(안건번호 제2026-122204호~12322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122204호~122205호(순번 1번~2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일본 만화를 무단으로 복제ㆍ전송한 사안으로,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송한 점, 원저작물 이용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불법복제물 외에 보호해야 할 표현이 발견되지 않는 점, 복제·전송 분량이 상당하여 원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122206호(순번 3번)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만화의 일부를 복제·전송한 사안으로, 원저작물 만화의 일부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원저작물 만화의 보너스 부분을 소개하는 게시물의 작성 취지 및 게시된 사이트의 성격 등에 비추어 게시물 내용만으로는 원저작물을 대체하거나 원저작물의 현존하는 혹은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6-122207호~123229호(순번 4번~1026번)는 모두 불법복제한 영상물, 웹소설,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각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다만, 위 사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에게 저작권법 준수를 안내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함.

o 제2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접속차단 시정권고 4건 (안건번호 제2026-225호~228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6-225호~227호(순번 1번~3번)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접속차단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6-228호(순번 4번)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일부 영상 외에 나머지는 저작권자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보호원의 저작권법에 의한 접속차단 필요성의 인정은 신중해야 할 것이고, 음란물이라는 점에서는 형법 등 타법에 의해 권리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한 점, 접속 차단을 위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심동섭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6-17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심동섭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특별한 의견 없음.

- 방윤섭 전문위원: 저작물명, 사이트명이나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 등은 비식별 처리하도록 하겠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심동섭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민원 정보 및 사이트명, 저작물명과 관련한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안건상정

o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방윤섭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OOOO', 'OOOO', 'OOOOO OOO OOO' 등임.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심동섭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방윤섭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7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883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3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OOOOOO'에 일본 만화의 이미지 등을 복제·전송한 사안이며, 총 3개 안건, 3개 게시물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1번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순번 1번~2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인 만화의 한 화 분량을 게시물에 게재하여 불법복제물을 공중에 제공하고 있으며, 게시물 및 그에 따른 복제·전송물은 이용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음. 순번 1번~2번 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본 만화의 한 화 분량 전체를 이용하고 있는 등 저작물의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기 어려움. 즉 인용, 공정이용 등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순번 3번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순번 3번은 원저작물 만화의 일부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게시물 내용만으로는 원저작물을 대체하거나 원저작물의 현존하는 혹은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공정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A 위원: 순번 3번에 게시된 만화는 총 4페이지인가.

- 방윤섭 전문위원: 그러함.

- B 위원: 순번 3번에 게시된 만화가 보너스 만화라고 하였는데, 보너스 만화라는 건 본편 마지막에 짤막하게 어떤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것인가.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3번의 보너스 만화는 단행본에만 게재된 만화임. 단행본의 뒷부분 또는 앞부분에 게재될 수 있는데, 일본에서 발매될 때 뒷부분에 게재된 것으로 보임. 이용자들에게 단행본을 구입하게 하는 일종의 유인책일 수도 있음.

- 심동섭 분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순번 1번~2번은 가결 의견이고, 순번 3번은 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2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하고, 순번 3번은 부결함.

- 방윤섭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102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해서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게시물 수는 1,880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웹소설,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방송 ‘유재석 캠프’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77번은 웹하드에서 방송 ‘유재석 캠프’ 1화~10화, 전편을 1,20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6. 5. 26.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예능 프로그램임.

(드라마 '공감세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68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공감세포' 2화, 한편을 15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6. 7. 4.부터 방영되었으며, 현재 OTT에서 서비스 중인 한국 드라마임.

(드라마 '스파이더 누아르'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58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스파이더 누아르' 1화~8화, 전편을 84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6. 5. 27.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공개된 미국 드라마임.

(드라마 '마셜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68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마셜스' 7화, 한편을 140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6. 6. 24.부터 국내 OTT인 '쿠팡플레이'에서 서비스 중인 미국 드라마임.

(드라마 '막리'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792번은 웹하드에서 드라마 '막리' 19화~20화, 두 편을 120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6. 6. 18.부터 중국 동영상 플랫폼 'WeTV'에서 공개된 중국 드라마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방윤섭 전문위원: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웹소설,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사안으로 시정

권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4번~1026번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이견 없음. 원안대로 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1026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 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122204호~122205호(순번 1번~2번)은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6-122206호(순번 3번)은 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6-122207호~123229호(순번 4번~1026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접속차단 심의

- 심동섭 분과위원장: 2호 안건을 보고해 주시기 바람.

- 방윤섭 전문위원: 이번 심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4개 사이트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속차단의 시정을 권고하기 위한 것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함.
(안건 요약표를 제시하면서) 상정된 4개 사이트 주요 정보는 검토보고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람.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다수의 불법복제물등을 자체 서버 또는 별도의 저장서버에 저장한 후 게시판, 뷰어, 재생 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이를 조회, 재생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에 대한 연결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의 불법복제물등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 아울러 심의 대상 사이트들은 차단 등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URL 주소 중 일부 숫자 등을 변경한 대체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심의 대상 사이트들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주요 권리자들의 이용허락 확인 내역을 제시하면서)복제ㆍ전송자에게 복제물등의 복제ㆍ전송에 관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검토보고서에 기재된 표와 같이 주요 권리자들에게 공문 등으로 심의대상 사이트에 대한 이용허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았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불법 웹툰 사이트에서 웹툰 이미지 파일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이미지

파일 등 호스팅용 도메인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를 통해 확인되는 해당 이미지 파일 등의 내용이 웹툰 등 불법복제물에 해당하는 점, 도메인 등록 정보의 상당 부분이 근접한 시기에 등록되었거나 그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심의 대상 도메인과 불법 웹툰 사이트들은 동일한 운영자 또는 관련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도메인을 통해 제공되는 내용은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임.

순번 2번은 저작권자의 승인 없이 운영되는 사설서버로서, 게임 클라이언트 및 접속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를 사설 게임 서버에 접속하도록 하여 원저작물의 프로그램이나, 그래픽, 인터페이스, 캐릭터, 맵 등 게임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 심의대상 사이트 운영자는 해당 게임 서비스가 권리자의 승인 없이 제공되는 사설서버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자의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사이트는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시정권고 대상인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순번 3번은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링크의 접속 대상인 사이트의 불법복제물등 전송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다수의 이용자를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에 유입시키는 역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 행위의 일환으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접속차단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순번 4번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국내 성인 영화 및 음란 영상 등

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로,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이 빠르게 확산되어 건전한 저작물 이용질서를 훼손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한다는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 및 음란물과 같이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등 타법에 따라 배포권, 판매권, 전시권 등이 제한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접속차단 시정권고 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제2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순번 4번 사이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은 영상물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이 음란 영상이고, 저작권자를 알 수 없고, 전시권 및 배포권 등이 제한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시정권고 대상과 구별된다는 것인가.

- 방윤섭 전문위원: 순번 4번 사이트에 게시된 영상 중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심의를 받은 영상물의 비중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움. 메인화면으로만 봤을 때는 국내 성인 영화의 비중이 높아 보이기는 하나, 메인화면 외 사이트 내에 게시된 영상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적인 비중은 알 수 없음.

- B 위원: 접속차단은 저작권 침해일 때 차단하는 것이지 음란물이라는 이유로 차단하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임.

- A 위원: 순번 4번 사이트는 저작권 침해로 신고된 것으로 보임. 다만, 일부 영상의 저작물성은 인정되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접속차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임.

- 방윤섭 전문위원: 그러함. 이런 사이트의 경우 성인 영화만 게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도 섞여 있는지 자체를 구별하기가 어려움. 또한 영상이 음란물인지 여부보다는 권리자를 확인할 수가 없어, 권리자의 의사를 추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임.

- B 위원: 저작권 침해는 주장을 강력히 하지 않은 것 같고, 침해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가.

- 방윤섭 전문위원: 저작권 침해라 하더라도 음란물로 판단되는 경우 시정권고의 소극적 요소로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 B 위원: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영상물 등급 분류를 받아 제한적으로나마 유통이 허용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누군가 무단으로 복제·전송 한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이며, 차단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임.

- A 위원: B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다만 순번 4번의 경우 영상물 등급 분류를 받은 영상물은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영상들의 경우에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소명되지 않고, 저작물성이 있는지 판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순번 1번~4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순번 1번~3번에 대해서는 가결 의견이며,

순번 4번에 대해서는 부결 의견임.

- 심동섭 분과위원장: 만만장일치로 순번 1번~3번의 심의대상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른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 시정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순번 4번은 부결함.

(접속차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6-225호~227호(순번 1번~3번)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권고를 가결하며,
안건번호 제2026-228호(순번 4번)는 부결함.”

4. 폐회 선언

o 심동섭 분과위원장이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6년 제18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7. 16.

분과위원장　　심동섭

위원　　정진근

위원　　한승원

위원　　홍준호